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 | 당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0. 24.(화) 06:00 < 10.24.(화) 석간 > 배포 2023. 10. 23.(월)

세계무역기구(WTO)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

-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세계무역기구(WTO) 다자체제 회복에 기여 기대

정부는 10. 23.(월) 세계무역기구(WTO) 고위급회의(10. 23.~24, 스위스 제네바) 참석 계기에 「수산보조금 협정*」의 비준을 위한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 개정 의정서 수락서를 세계무역기구(WTO)에 맡겼다.

*「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」(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)

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작년 6월 제12차 세계무역기구(WTO)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, 우리나라는 '23. 9. 12.(화)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. 이번 협정은 △불법·비보고·비규제 어업, △남획된 어족의 어업, △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이번 협정이 발효*되면 다자 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을 억제하여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고, 특히 우리 연근해에서의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·남획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 2/3(110개국)의 수락으로 발효되며 세계무역기구(WTO)는 제13차 각료회의('24. 2월)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임(10. 22일 기준 44개국 기탁)

한편, 이번 협정상의 금지 보조금은 「수산업법」, 「원양산업발전법」 등 국내법으로 이미 금지 및 관리 중으로 동 협정 발효 시에도 국내 수산 보조금 제도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이번 협정은 세계무역기구(WTO) 설립 이후 무역 원활화 협정('13. 12.)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, 세계무역기구(WTO)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.

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된 과잉어획·과잉역량에 이바지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후속 현상이 진행 중이며,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	책임자	과 장	윤정원 (044-203-59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혜 (044-203-592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주요 내용

□ 수산보조금 금지

○ **(IUU) 불법·비보고·비규제**(IUU; Illegal, Unreported, Unregulated) 어업에 가담한 선박 및 운영자에 대한 **보조금 금지** (3.1조)

○ **(남획) 남획된 어족**(overfished stock)에 대한 **보조금 금지** (4.1조)

- 다만, **지속가능한 수준**으로 자원을 **회복**하기 위한 보조금은 **허용**되며, **자원관리조치가 병행**될 경우에도 보조금 **허용** (4.3조)

○ **(비규제 공해)** 연안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**관할 외 공해**에서의 어업에 대한 **보조금 금지** (5.1조) 등

□ 국내 이행사항

① **(IUU어업 방지)** 각 회원국은 제3.1조(IUU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) 이행 보장을 위해 법, 규제, 행정절차 등 **국내제도 마련** (3.7조)

② **통보**

○ **(수산보조금)** 각 회원국은 보조금 정기통보 시에 수산보조금이 지급되는 **어업 활동의 유형** 또는 **종류**를 통보 (8.1조)

* ①어족 상태, ②관련 어족의 보존·관리 조치, ③선단능력, ④선박 명칭·식별번호, ⑤어획데이터 등 (민감)정보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공

○ **(IUU어업)** 매년 위원회에 IUU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정된 **선박** 및 **운영자 목록** 통보 (8.2조)

○ **(이행조치)** 발효일로부터 1년 내 위원회에 제3조, 제4조, 제5조*에 규정된 협정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, 취해진 조치 통보 (8.3조)

* 제3조(IUU 보조금), 제4조(남획 보조금), 제5조(기타 보조금)

③ **기타**

○ **(수산제도 설명)** 발효일로부터 1년 내 WTO 수산위원회에 협정 관련 법, 규제, 및 행정절차를 참고하여 수산제도에 대한 설명 제공 (8.4조)

○ **(지역수산관리기구 통보)** 동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회원국은 서면으로 당사국인 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에 통보 (8.6조)

□ 일몰조항

○ 협정 **발효 후 4년** 내에 유류보조금, 원양어업 보조금, 개도국 특혜 등 **잔여쟁점**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, **협정 전체 실효** (12조)